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48
----------	-------

발의연월일 : 2018. 2. 28.

발의자 : 이혜훈 · 하태경 · 유승민

남인순 · 박주민 · 정동영

이태규 · 채이배 · 김중로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쟁 조정·인증·징계·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0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p>